

징계규정

- 제정 : 2006. 3. 1.
- 개정 : 2011. 6. 30.
- 개정 : 2012. 6. 29.
- 개정 : 2016. 3. 9.
- 개정 : 2017. 8. 31.
- 개정 : 2018. 8. 31.
- 개정 : 2019. 8. 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직원들이 직무 또는 직무이외의 사항으로 인한 과실 또는 고의에 의한 과오를 저지른 사건에 대한 책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본교 교원(전임, 초빙, 겸임 등 포함), 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적용한다.

② 본교 교.직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법령, 고운학원 정관 또는 본교 제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중징계 : 파면, 해임, 정직
 2. 경징계 : 감봉, 견책
- ② 파면과 해임은 신분을 제적하며 면직한다.
- ③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며,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④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는 근로기준법 제95조에 의해 지급한다.
- 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 ⑥ 시말서, 경위서 등 징계관련 증빙자료의 내용이 제4조의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그 정도가 경미할 때에는 총장이 “경고”, 또는 “주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징계사유)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

1. 교육관계 법령과 정관 및 본교의 제 규정, 지시 등에 위반하여 교.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할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4-1-19 징계 규정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학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켰을 때
4. 고의 또는 과실로 학교에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을 때
5. 복무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가 있을 때
6. 상사의 직무상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때
7. 성희롱 및 언어적, 신체적 폭력행위를 하였을 때
8.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때

제5조(입증책임)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학교에 있으며 이를 결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

제6조(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7조(징계절차) ① 총장은 본교 교.직원에 대해서 제4조의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교원은 임면권자에게, 직원 및 조교는 일반직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별자>를 한다.

1. 인사기록카드사본
2. 확인서<별자>
3. 혐의내용을 입증할 관계증빙자료 일체

② 총장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그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징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징계보류)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할 사건 또는 요구된 사건이 감독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인 때에는 동일사건에 관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제9조(징계의 집행) ① 임면권자는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서<별자>를 통고받은 경우 통고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면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② 임면권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징계처분사유설명서<별자>를 징계의결서 사본과 함께 당해 교.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징계양정의 기준) ① 징계양정기준은 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단, 음주운전 징계기준은 별표로 따로 정한다.

②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사고의 원인 및 정도, 피해보전,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총장이상의 상훈을 받은 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11조(효력정지) 징계절차에 있어 하자가 있을 시는 어떠한 결정사항도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제12조(부당징계시 처리)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징계가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징계로 판정되어 이것이 확정되었을 경우 본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징계의결 당일부로 무효 처분
2. 징계로 인한 임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출근시 당연히 받았을 임금을 평균임금의 100%를 추가 가산하여 보상하며, 법률구제 활동에 수반되는 모든 경비를 지급
3. 본교가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초심판결에 따라 복직

제13조(징계책임) ① 징계처분은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② 민.형사상의 배상책임자가 배상 능력이 없을 때에는 재정보증인으로 하여금 배상케 한다.
- ③ 징계위원회와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그 법률적 다툼이 종료되어 법률적으로 정당한 징계로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조합이 소송비용을 포함하여 기지급 임금에 평균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본교에 보상한다.

제14조(징계위원회) 교원 및 일반직원 징계위원회의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15조(재심청구) 징계처분을 받은 교.직원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통칙)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징계령 및 교육공무원징계령 또는 정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이전에 제정된 교원징계규정은 이 규정으로 통합하고, 동 교원징계규정은 폐기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4-1-19 징계 규정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 자>

교(직)원 징계의결 요구서

인 적 사 항	성 명	한 글		소 속		직위(급)	
		한 자		주민등록 번호		재직기간	
	주 소						
징 계 사 유							
요 구 권 자 의 결 의 견							
<p>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p> <p style="margin-left: 200px;">년 월 일</p> <p style="margin-left: 150px;">(징계의결요구권자) 수 원 과 학 대 학 교 총 장 [인]</p> <p style="margin-top: 20px;">학교법인고운학원 이사장 (교원징계위원회/일반직원징계위원회 위원장) 귀하</p>							

<별 지>

확 인 서

	① 소 속	② 직 급(위)	③ 성 명		
1. 인적사항	(현 재)	(현 재)	(한글)		
	(혐의당시)	(혐의당시)	(한자)		
2. 비위유형	① 금품 및 향응수수관계 (<input type="checkbox"/> 해당됨,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② 공금의 횡령·유용관계 (<input type="checkbox"/> 해당됨,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③ 중점정화대상 비위관계 (<input type="checkbox"/> 해당됨,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3. 감경대상 공적유무 및 감경대상비위 해당여부	① 공 적 사 항			② 징 계 사 항 [불문(경고)포함]	
	포상일자	포상종류	시 행 청	일 자	증 류 발 령 청
	③ 성실·능동적 업무처리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됨,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4. 혐의자의 평소소행	*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주의·경고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함				
5. 근무성적 (최근 2년)	(년 월)	점,	(년 월)	점	점
	(년 월)	점,	(년 월)	점	점
	* 해당사항 없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함				
6. 기 타	* 기타 정상참작 사유를 기재함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작성책임자(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실인)

징계의결요구권자(직위)
수 원 과 학 대 학 교 총 장
[관인]

<별 표>

음주운전 징계기준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비 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강등 - 정직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 - 강등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해임	